

1. 개정이유

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항공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항공 현장에서 매순간 생산되고 있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집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이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적정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활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우선 구축되어야 함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의 처리’, ‘가명처리’ 등 용어를 신설함(안 제2조7의2, 제2조11의2, 제2조11의3)
- 나. 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기준 이행 등을 담보함(안 제53조의2)
- 다. 최소한의 데이터 수집, 수집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가명처리 규정 등 데이터 수집·처리·이용 관련 절차 등을 구체화함(안 제54조의2, 제54조의3, 제54조의4)
- 라. 데이터의 보호조치 및 관리 감독, 보호책임자 지정, 처리 방침의 공개 등 절차를 신설함(안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6)
- 마. 데이터가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설함(안 제56조의5, 제56조의 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안전데이터”를 “항공안전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안전정보”를 “항공안전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

라.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를 하는 기관

11의2.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1의3. “가명처리”란 데이터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그 대상자 또는 데이터등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데이터제공자

제5조제3항 중 “데이터·정보”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데이터·정보”를 “항공안전데이터등”으로 한다.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2 . ICAO협약 부속서별 세부기준 현황]

부속서 명칭	관련 시행규칙	주요 행정규칙
부속서1 (자격관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장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부속서2 (항공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제6장	-
부속서3 (항공기상)	· 기상법 시행규칙	· 항공기상업무 규정
부속서4 (항공지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부속서5 (측정단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
부속서6 (항공기운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제7장	· 운항기술기준
부속서7 (항공기등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장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부속서8 (항공기감항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 항공기 기술기준
부속서10 (항공통신)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부속서11(항공교통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 항공교통업무기준 , 항공교통관제절차
부속서12 (수색구조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 구조 운영규정
부속서13 (사고조사)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부속서14 (비행장)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속서15(항공정보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부속서16 (환경보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 항공기 기술기준
부속서18 (위험물운송)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 위험물운송기술기준
부속서19 (안전관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3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3 .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관련 조직 현황(요약)]

구 분	대분류	소 분 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주요 임무
항 공 정책실	항 공 안전 정책	안전 정책	·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법제, 조직 및 예산 등 포함) · 항공자격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공 운항	· 항공기 운항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총괄 · 항공운항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지방항공청장 위임사항 제외)
		항공 기술	· 정비 및 감항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공 교통	· 항공교통·항공정보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ICAO 전략기획	· 국제기준관리 총괄
	공항 항행 정책	공항 운영	· 공항운영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행 위성정책	· 항행시설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지 방 항공청	서울 지방 항공청	사 무 국	· 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사용사업·자가용 관련 제29조에 따른 안전면허 승인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공항운영 분야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감시활동의 수행 · 항공훈련 분야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감시활동의 수행
	부산 지방 항공청		
	제주 지방 항공청		
항 공 · 철 도 사고조사위원회			· 사고·준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행 정 안전부	소 방 청		· 내륙 지역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해 양 경 찰 청		· 인천비행정보구역 해상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기상청	항 공 기 상 청		·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국 방 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안전지원과 비행장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 운영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등 항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제13조제2항제6호 중 “**공항안전환경과장**”을 “**공항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항행시설과장**”을 “**항행위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데이터·정보를 수집하는**”을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하는**”으로, “**데이터·정보를 활용**”을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

호 및 제3호 중 “안전데이터”를 각각 “항공안전데이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안전데이터”를 “항공안전데이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안전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유”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처리 및 보호”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안전데이터 수집)”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1. 법 제2조제10의4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
2. 법 제2조제10의5에 따른 항공안전정보
4. 안전위험도 평가 결과

제52조의 제목 “(안전데이터 처리)”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로, “안전데이터의”를 “항공안전데이터등의”로, “안전데이터수집”을 “항공안전데이터수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분석된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를 “안전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정보”를 각각 “항공안전데이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7조”를 “제56조의8”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민관협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

제54조의 제목 “(안전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①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내의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제공자의 권리가 침

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방식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관련 의견제시 등의 기회를 보장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데이터 제공자와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에 포함된 상호, 항공기 편명, 종사자 성명 등에 대하여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54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만 항공안전 데이터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경우

5.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통계작성 및 연구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데이터제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이용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목적

2. 이용하려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4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제공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제공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데이터등의 비식별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제목 “(데이터보호 관리자의 지정)”을 “(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업무 담당자가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일 보호 및 관리·감독
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
9. 그 밖에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의3(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적용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 담당자 연락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데이터제공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5(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조치
 3.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점검 조치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6(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일정 및 방법, 교육내용
3.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의7(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자율적인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의8(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민감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위험도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데이터등의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
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
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
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
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9월 1일”로, “12월 31일”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보유·관리·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p> <p><u>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u></p> <p><u>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u></p> <p><u>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u></p> <p><u>라.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u></p> <p><u>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u></p>

8.·9. (생략)

10. “안전데이터(safety data)”란 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1. “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법 제2조제10의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신설>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5

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

통관제 업무를 하는 기관

8.·9. (현행과 같음)

10. -----
--항공안전데이터-----
-----.

11. -----
--항공안전정보-----
-----.

11의2.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1의3. “가명처리”란 데이터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12. ~ 32.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2. (생략)

3. 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제5조(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①·② (생략)

③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각종 데이터·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제9조(법령 미준수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행정처분의 필요성, 안전문화에 대한 영향성, 데이터·정보의 보호,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그 대상자 또는 데이터등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 3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1. 2. (현행과 같음)

3. 데이터제공자

제5조(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 -----
-----.

제9조(법령 미준수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항공안전데이터등-----

안전문제의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제11조(부문별 세부기준의 현황)
ICAO협약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부속서별 세부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 ICAO협약 부속서별 세부기준 현황]

부속서 명칭	관련 시행규칙	주요 행정규칙
부속서1 (자격관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장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부속서2 (항공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제6장	-
부속서3 (항공기상)	· 기상법 시행규칙	· 항공기상업무 규정
부속서4 (항공지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부속서5 (측정단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
부속서6 (항공기운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제7장	· 운항기술기준
부속서7 (항공기등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장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부속서8 (항공기감형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 항공기 기술기준
부속서10 (항공통신)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부속서11(항공관제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 항공교통관제절차
부속서12 (수색구조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 구조 운영규정
부속서13 (사고조사)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부속서14 (비행장)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속서15(항공정보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부속서16 (환경보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 항공기 기술기준
부속서18 (위험물운송)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 위험물운송기술기준
부속서19 (안전관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제11조(부문별 세부기준의 현황)

-----.

[표 2 . ICAO협약 부속서별 세부기준 현황]

부속서 명칭	관련 시행규칙	주요 행정규칙
부속서1 (자격관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장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부속서2 (항공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제6장	-
부속서3 (항공기상)	· 기상법 시행규칙	· 항공기상업무 규정
부속서4 (항공지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부속서5 (측정단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
부속서6 (항공기운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제7장	· 운항기술기준
부속서7 (항공기등록)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장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부속서8 (항공기감형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 항공기 기술기준
부속서10 (항공통신)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부속서11(항공교통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관제절차
부속서12 (수색구조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 구조 운영규정
부속서13 (사고조사)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부속서14 (비행장)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안전운영기준
부속서15(항공정보업무)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장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부속서16 (환경보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 항공기 기술기준
부속서18 (위험물운송)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 위험물운송기술기준
부속서19 (안전관리)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3조(국토교통부의 기능 및 임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총괄)하며 관련 조직은 표 3과 같다

[표 3 .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관련 조직 현황(요약)]

구분	대분류	소분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주요 임무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	안전정책	·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법제, 조직 및 예산 등 포함) · 항공자격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공운항	· 항공기 운항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총괄 · 항공운항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지방항공청장 위임사항 제외)
		항공기술	· 정비 및 감항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공교통	· 항공교통·항공정보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ICAO 전략기획	· 국제기준관리 총괄
	공항행위정책	공항안전환경	· 공항운영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행시설	· 항행시설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사무	· 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사용사업·자가용 관련 제29조에 따른 안전면허 승인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공항운영 분야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감시활동의 수행 · 항공훈련 분야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감시활동의 수행	
	지방항공청 사무	· 사고·준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방항공청 사무	· 내륙 지역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 인천비행정보구역 해상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	소방청	· 내륙 지역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해양경찰청	· 인천비행정보구역 해상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기상청	항공기청	·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국방부(해군본부, 공군본부)		·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안전지원과 비행장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 운영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등 항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제13조(국토교통부의 기능 및 임무) ① -----

-----.

[표 3 .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관련 조직 현황(요약)]

구분	대분류	소분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주요 임무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	안전정책	·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법제, 조직 및 예산 등 포함) · 항공자격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공운항	· 항공기 운항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총괄 · 항공운항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지방항공청장 위임사항 제외)
		항공기술	· 정비 및 감항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공교통	· 항공교통·항공정보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ICAO 전략기획	· 국제기준관리 총괄
	공항행위정책	공항운영	· 공항운영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항행시설	· 항행시설 분야 항공안전프로그램 총괄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사무	· 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사용사업·자가용 관련 제29조에 따른 안전면허 승인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공항운영 분야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감시활동의 수행 · 항공훈련 분야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감시활동의 수행	
	지방항공청 사무	· 사고·준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방항공청 사무	· 내륙 지역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 인천비행정보구역 해상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행정안전부	소방청	· 내륙 지역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해양경찰청	· 인천비행정보구역 해상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기상청	항공기청	·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국방부(해군본부, 공군본부)		· 군비행장을 사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안전지원과 비행장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 운영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 등 항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운영	

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고
별표 5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② (생략)

제35조(위해요인 식별)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그림 1의 각 종 데
이터·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에 저장된 데이터·정보를 활용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항공체계 전반에 영
향을 주는 위해요인, 새롭게 출
현하는 안전리스크의 경향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

~ 3.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장에
따라 수집한 안전데이터를 활용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위해요인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

1. ~ 4. (생략)

5. 각종 안전데이터의 경향성
분석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이 효과적으로 위해요인 식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장

별표 4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위해요인 식별) ①
항공
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활용

~ 3. (현행과 같음)

②
항공안전데이터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안전데이터

③

한다.

1. 필요한 안전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2. (생략)

3. 안전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④ (생략)

제37조(항공안전문제의 해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데이터 분석, 점검, 조사 등을 통해 인지한 안전문제를 적시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한다.

②·③ (생략)

제6장 안전데이터 수집, 분석 및 공유

제51조(안전데이터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2.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3.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

1. ----- 항공안전데이터-----

2. (현행과 같음)

3. 항공안전데이터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항공안전문제의 해소) ①

----- 항공안전데이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장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처리 및 보호

제51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0의4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

2. 법 제2조제10의5에 따른 항공안전정보

<삭제>

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준사고 조사결과

5. (생략)

6. 위험도평가 결과

7. (생략)

② (생략)

제52조(안전데이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등을 위해 “안전데이터수집 및 처리시스템” (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 운영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에 따른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국가 안전성과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안전위험도 평가 결과

3.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5.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의 ----- 항공
안전데이터수집 -----

1. ~ 3. (현행과 같음)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② -----
----- 분석
된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으로 식별된 안전문제, 위해요인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위험도 경감 조치를 실시한다.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및 제54조·제55조에 따른 데이터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제53조(데이터 거버넌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데이터·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 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데이터·정보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 및 본 고시 제54조부터 제57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다.

③ -----

----- 안전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후단 삭제>

제53조(데이터 거버넌스) ① -----

----- 항공안전데이터등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항공안전데이터등-----

제56조의8-----
-----.

<신 설>

제54조(안전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① ~ ⑦ (생략)

<신 설>

제53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민관협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

제54조(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내의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제공자의 권리

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방식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관련 의견제시 등의 기회를 보장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에 포함된 상호, 항공기 편명, 종사자 성명 등에 대하여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54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 설>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만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경우
5.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통계작성 및 연구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데이터제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

우. 다만,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이용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목적
2. 이용하려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4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

<신 설>

제56조(데이터보호 관리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하는 데이터·정보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는 전문관리자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신 설>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제공자에게 그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제공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제공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데이터제공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비식별화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6조(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

<신 설>

관의 장은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업무 담당자가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일 보호 및 관리·감독

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

9. 그 밖에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56조의3(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신 설>

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의4(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적용 기간을 표시하고 내용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 담당자 연락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신 설>

11. 데이터제공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5(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조치

3.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점검 조치

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6(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당
해 연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
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데이
터등의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합되어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일정 및 방법, 교육내용
3.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 교
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신 설>

제56조의7(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자율적인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

<신 설>

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의8(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민감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사
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
한 사항

12. 안전위험도 평가 및 대응방
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데이터등
의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1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업
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
항

15.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
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
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
다.

③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
임자는 연1회 이상으로 내부 관
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
리하여야 한다.

제6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제60조(재검토기한) -----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항공안전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 관련)

1. 운영위원회

가. 위원회의 임무

1)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등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논의

2) 주요 안전문제 공유 및 안전정보의 공유

<신 설>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 다. (생략)

2. 실무협의체

----- 2023년 9월 1일 -----

----- 8월 31일 -----

[별표 2]

항공안전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 관련)

1. 운영위원회

가. 위원회의 임무

1) -----

2) -----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보유·관리·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4) -----

나. ~ 다. (현행과 같음)

2. 실무협의체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